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0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
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11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3. 11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달서구청장(복지정책과장)
- 발의일자: 2023. 11. 3.(금)
- 회부일자: 2023. 11. 3.(금)
- 검토기간: 2023. 11. 6.(월) ~ 11. 10.(금)

2. 개정이유

-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. 12. 31.자로 만료되어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용어 수정 등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7조)
- 나. 용어 수정 등(안 전반)

4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이를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,
- “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”를 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”로 명칭을 변경하며¹⁾, 기금출납원을 “업무담당팀장”에서 “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1) 2001년 5월 전부개정을 통해 「의료보호법」이 「의료급여법」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'의료보호대상자'를 '의료급여대상자'로, '의료보호기금'을 '의료급여기금'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「의료급여법」

제2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~④ <생략>

□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

제28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·② <생략>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(이하 “기금계정”이라 한다)을 설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④~⑧ <생략>

⑨ 의료급여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법·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